

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- 검 토 보 고 -

□ 제안이유

-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(매립장, 소각시설)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민 지원기금의 재원 조성과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정하여야 할 규모를 정함.(안 제3조)
- 주민 지원협의체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능에 관하여 정함. (안 제4조, 제5조)
-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6조)
- 기금의 용도 및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. (안 제7조, 제8조)
- 기금관리를 위한 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. (안 제9조, 제10조)
-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둘 수 있음.(안 제12조)
- 지원협의체에서 시행할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. (안 제13조)

□ 참고사항
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

□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추진절차를 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하여 개략 보고 드리면,

국토계획에의 반영 도시기본계획반영 입지선정계획결정 · 공고 (조례에 정하는 규모
(법 제3조) (법 제4조) (법 제9조제1항) 이상시설의 경우)

입지선정위원회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 · 고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
(법 제9조제3항) (법 제10조) (법 제11조의3)

주변 영향지역의 결정 · 고시 지원협의체 구성원 기준등 주민지원기금조성
(법 제17조) (법 제17조의2) (법 제21조)

주변 영향지역지원 지역주민의 감시
(법 제22조) (법 제25조)

○ 조례 제정 시기

위 표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 결정 · 공고시 조례에 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일 경우에 결정 · 공고토록 규정한바, 동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 결정 · 공고 이전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
○ 조례와 협약서와의 상충여부

2000. 9. 5자 주민요구사항 협약서 및 2004. 3. 31자 대률리 주민지원협의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회신 사항과 본 조례안과의 상충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함.

○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 · 운영 (안 제4조)

이미 구성된 대률리 주민지원 협의체와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는 협의체와의 대표성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의 여부.

○ 주민 감시요원

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으로 지급토록 규정된바, 본 조례에 감시요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.

○ 여타 조항은 같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고, 기금 관리를 위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229호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6. 15.

제 출 자 : 예산군수

1. 제안이유

- 예산군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 조성사업 관련 주민과 협약된 사항으로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(매립장,소각시설)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,
-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·운영에 관한사항 및 기능(안제4조, 제5조)
-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과 용도 및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설치 관리하도록 함(안 제6조내지제10조, 제12조)
- 군수는 기금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주민지원협의체 심의를 거쳐 정하고 기금의 지원절차등을 정함(안제11조)
-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·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.(안제15조)

3. 참고사항
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예산군조례 제 1 호

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주변영향지역”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·고시된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(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) 법 제9조제1항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”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및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.

제2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

제4조(지원협의체의 구성·운영)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 주민지원협의체(이하 “지원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호에 의거 15인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.

1.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군의원 1인
2. 폐기물처리시설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

정한 지역주민 대표 12인

3.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

②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, 지원협의체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④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.

⑤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기타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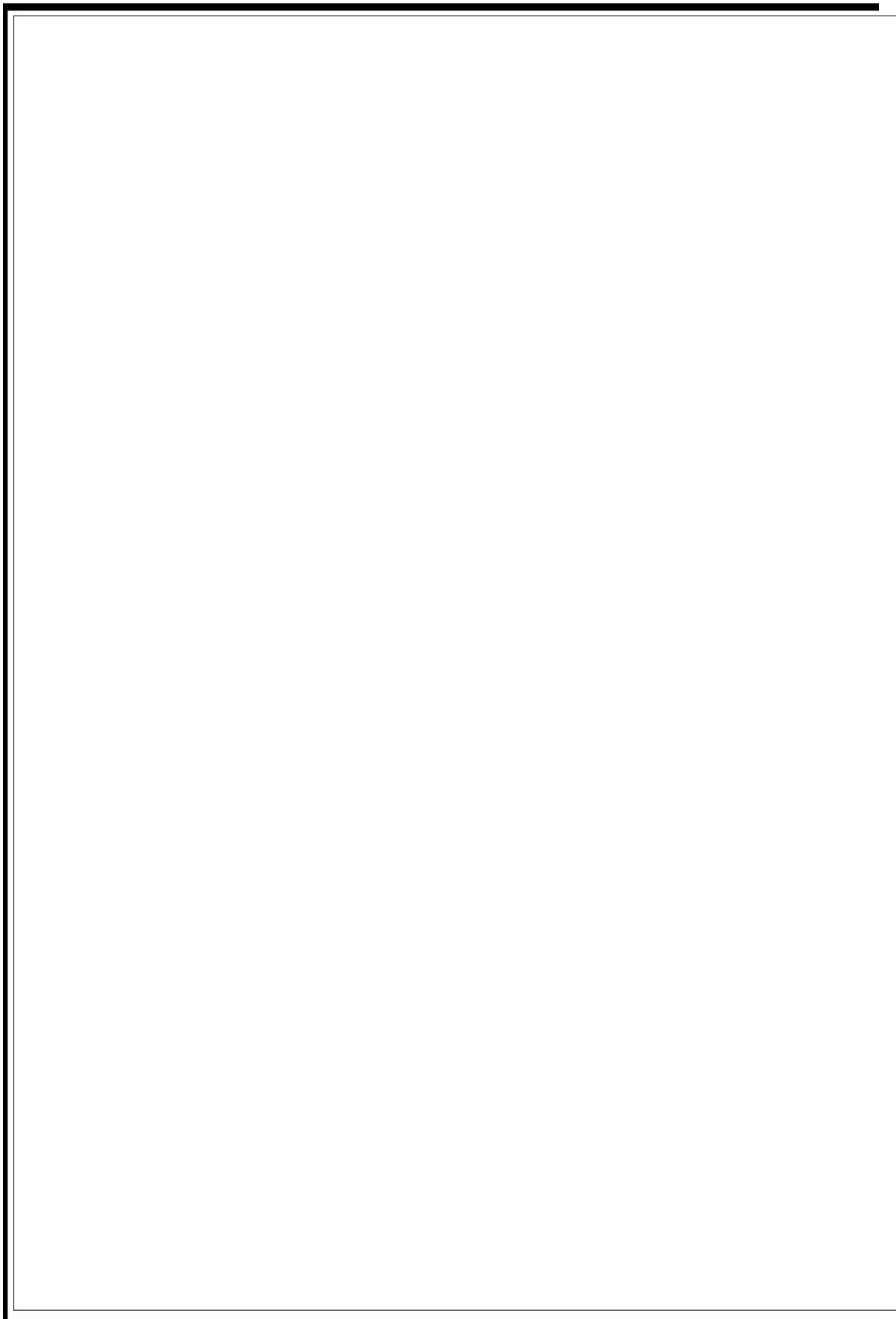
제5조(지원협의체의 기능)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1.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
2. 주변영향지역 지원과 지원금 사용에 관한 계획
3.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

제3장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

제6조(기금의 조성)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 출연금
2. 매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이익금의 10%이내



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금운용·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

제11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

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기금관리 공무원)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환경보호과장
2. 기금출납원 : 환경시설관리담당
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·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 칙

제13조(사업계획서의 제출) 지원협의체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세부사업내역
2. 회의록
3. 기타 필요한 증빙서

제14조(사업계획서의 변경 등)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5조(감독)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·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6조(실비변상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「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기금의 수입·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「예산군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

사업 구분	사업 내용	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
1. 소득증대사업	농림수산업시설	공동영농·영어시설(공동영농기계·공동축산·공동어선을 포함한다) 농기구수리시설, 공동양식·양어장, 생산품공동저장소, 공동가공공장, 농업용자수지·농로·임도·농업용수로·농업용양수장·농작물 및 임산물재배시설 등
	상공업시설	공업용수도·직업훈련소·시장·공용창고·구판장·소규모공단 등
	관광산업	휴게소·휴양소·토산품판매장 등
2. 복리증진사업	의료시설	보건진료소 등
	사회 복지시설	노인회관·마을회관·공중목욕탕·가로등·어린이놀이터·버스승차대기장 등
	도로시설	소규모도로 등
	상하수도시설	상수도시설·하수도시설 등
	교육·문화시설	도서관·유치원·통학차·문화시설·향토박물관·사적시설·사회교육시설 등
	환경·위생시설	쓰레기처리시설·배수구시설·청소차·공중위생시설·환경감시시설 등
	운동·오락시설	운동장·아영장·운동기구 등
	전기·통신시설	공용전기시설 및 전화시설·텔레비전 방송 공동 수신시설 등
3. 육영사업	기타	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지원(소각시설에 한한다), 주택개량등의 주거환경개선(냉·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) 등
	컴퓨터·피아노 등 교육기자재·학자금 및 장학금지급·장학기금적립·학교급식지원 등	
4. 기타사업	기타	소득증대·복리증진·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군수가 정하는 사업

비 고 :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향상, 복리증진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·조사 및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·보수 및 운영업무가 포함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사업계획(변경) 신청서

① 사업 개요

사업명	
위치	
사업비	
공사규모	
사업기간	

② 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

사업의수행주체	
보조사업의 시행방법	

③ 사업비 내역

총 사업비(원)	보조금액(원)	자부담(원)	비고

④ 자담 및 방법

자부담금액(원)	
부담방법	

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(변경)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주소 :

단체명 :

성명 :

전화번호 :

예산군 수.gov

구비서류	1. 세부사업내역
	2. 회의록
	3. 기타 필요한 증빙서